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중간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9996)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02-3783-0901)
(환헤지 관련 업무 위탁운용사: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6년 01월 20일

주) 본 간이투자설명서는 2011년 01월 31일자로 최초 제출된 이후 정정신고된 내용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본문 전체를 상기 작성기준일자로 갱신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6년 01월 28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총액: 60,000,000,000,000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 (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11.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으로부터 우선 분배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100%까지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월 분배금에서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14.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전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중 전환에 관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그 자산의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월로 분배하는 월 분배금은 예금의 이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며, 또한 월 분배금은 전혀 확정된 수익이 아닙니다.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 펀드 - 이머징마켓채권펀드 (Fidelity Funds Emerging Market Debt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의 채무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를 수행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입니다. 이러한 환헤지 거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참조지수: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Hedged to KRW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미국은행그룹인 JP Morgan이 작성하여 발표한 글로벌 신흥시장 내 거래되는 대외 채권 지수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hedged to KRW: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지수에 대해 한국원화로 헤지한 지수

(4)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내용
명칭	- 피델리티펀드 (Umbrella Fund) - 하위펀드 명칭: 피델리티펀드-이머징마켓채권펀드 (Fidelity Funds Emerging Market Debt Fund) - 종류: A-ACC-USD Class
펀드설립일	- 2006년 1월 23일
자본시장법상 등록일	- 2009년 5월 3일
펀드 규모	- 미화 1,071백만달러 (2015년 12월말 기준)
외국집합투자업자 (외국관리회사)	- FIL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룩셈부르크) 에스에이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 FIL 펀드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주요투자위험	-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국 시장 증권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클 수 있고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피투자펀드가 속한 피델리티펀드는 일반위험 (마켓타이밍(Market Timing) 및 빈번한 거래(Excessive Trading) 관련 위험), 특수위험 (아래 명시), 및 기

	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2015년 8월자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글로벌 투자설명서 기준). 특수위험: I.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일반 위험: 펀드의 수익률, 가치변동, 펀드 및 클래스의 해지, 법률 및 조세위험, 외환위험, 유동성위험, 가격결정 및 평가위험, 거래상대방 신용 및 결제 위험, 증권 대여, 투자기간(Investment Horizon) 위험, 주식클래스 교차책임 위험; II. 주식 관련 위험: III. 채권 관련 위험: 채권, 채무증서(Debt Instruments) 및 고정수입(고수익증권 포함), 현금형 펀드, 투자적격등급위험, 낮은 등급/무등급 증권, 신용위험, 유동화/구조화 채무증서, 대출에 대한 투자, 저당관련증권; IV. 국가집중 및 스타일 관련 위험: 국가집중, 투자집중, 중소형주 투자; V. 이머징시장 위험; VI. 특정 투자수단 관련 위험: 중국 자산,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후강통 (쿼터 제한(Quota Limitations), 거래 중지 위험, 거래일의 불일치, 프론트-엔드 모니터링(front-end monitoring)에 따른 매도 제한, 청산 및 결제위험, 중국 A 주식 보유 명의대리인 선임(nominee arrangements), 규제 위험, 주식연계채권 및 신용연계채권(구조화채권),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하이브리드(Hybrids) (쿠폰 취소, 콜 연장 위험).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s) (사유발생 수준 위험, 자본구조 전도 위험, 유동성 및 집중도 위험); VII. 자산배분 위험; VIII. 추적오차 위험; IX. 자본금 분배 위험; X. 파생상품 관련 위험: 금융파생상품(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및 신용위험, 결제 위험, 펀드 운용 위험, 상품 위험, 기타 위험), 특정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증권선도계약 및 차액계약, 주가지수, 단일 주식, 금리 및 채권 선물, 장내외옵션, 금리스왑, 외환계약, 신용디폴트스왑(CDS), 총수익스왑(TRS), 인플레이션지수스왑(inflation index swap) -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바람.
--	---

※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서, 당해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3) 세부 운용전략 (피투자펀드의 운용전략)

당해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 펀드 - 이머징마켓채권펀드(Fidelity Funds Emerging Market Debt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이머징마켓의 채무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수익(income)과 자본이득을 달성하고자 함
- 이머징마켓 발행인들의 현지시장 채무증서, 채권, 주식, 회사채 및 낮은 등급의 채무증권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음
-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러시아 포함) 및 중동 지역에 주로 투자하나, 위 지역들에 한정되지 아니함

(4)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 내 투자자산 중 매매가 자유로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헤지의 목적은 주로 선물환계약을 이용하여 피투자펀드의 외국통화자산 및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투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통화에 대한 환헤지 거래는 기타 통화와 대비한 원화가치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실행될 것입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환헤지가 실행되는 경우,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목표환헤지비율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90% 수준이지만,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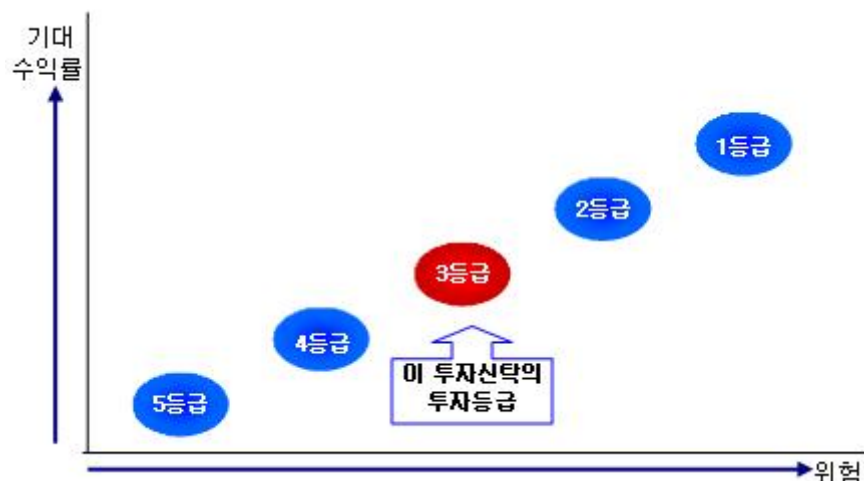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환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대상 자산의 비율이 달라져 투자위험도 이 투자신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전환신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유종목이 부도발생 또는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배금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으로부터 우선 분배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100%까지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월 분배금에서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으므로 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월 분배금액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매 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과 함께 과표 기준가격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과세효과로 인하여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실제로 최종 투자자가 받는 월 분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집합투자기구는 분산투자관련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위험, 유동성위험, 환매위험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머징마켓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자는 투자기간이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합니다. 이머징마켓 채권은 투자전략의 다양화를 위한 일환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투자대상이지만 위험 회피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매월 자금 지급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매월 분배하는 월 분배금은 예금의 이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또한 월 분배금은 확정된 수익이 아닙니다.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의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운용전문인력

(2015년 12월말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미영	1975	포트폴리오 매니저	23개	14,844 억원	[주요 경력] 2013-현재 피델리티자산운용 포트폴리오매니저 2004-2013 피델리티자산운용 투자애널리스트 1999-2004 굿모닝신한증권 주식애널리스트 [학력 및 기타 이력] 국제재무분석사(CFA)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 ※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피델리티펀드-이머징마켓채권펀드

(2015년 9월 기준)

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 합투자기구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규모 (USD, 백만)	
Steve Ellis	1970	포트폴리오 매니저	2	167.93	경력: 2012 - 현재 EMD 포트폴리오 매니저 Fidelity Worldwide 2006 - 2012 Goldman Sachs AM 2001 - 2006 Lehman Brothers 1997 - 2001 ING Barings 1993 - 1997 NatWest Markets 학력 및 자격: Bristol University, BSc (Hons) Economics

(3) 모투자신탁의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이러한 헤지 거래는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내 외환 헤지거래를 전담하는 팀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다만, 헤지거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팀과 실제 헤지거래를 위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다른 등 관련된 팀이 다수인 관계로 담당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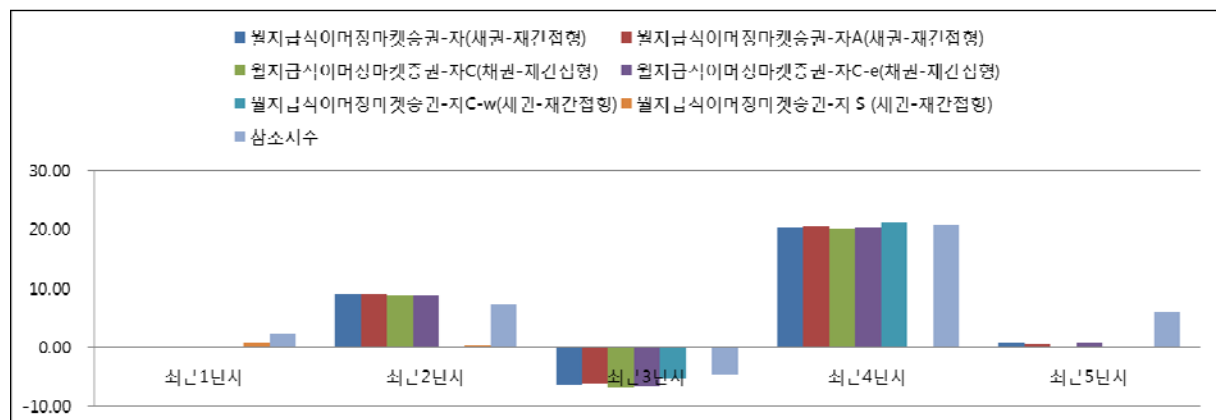
한편, 헤지거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내용에 따라

소극적(passive)으로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연도	최근1년차 2015.01.01 ~ 2015.12.31	최근2년차 2014.01.01 ~ 2014.12.31	최근3년차 2013.01.01 ~ 2013.12.31	최근4년차 2012.01.01 ~ 2012.12.31	최근5년차 2011.05.12 ~ 2011.12.31
월지급식이머징마켓증권- 자(채권-재간접형)	0.18	8.99	-6.34	20.38	0.91
월지급식이머징마켓증권- 자A(채권-재간접형)	0.25	9.08	-6.28	20.52	0.43
월지급식이머징마켓증권- 자C(채권-재간접형)	-0.10	8.70	-6.61	20.11	
월지급식이머징마켓증권- 자C-e(채권-재간접형)	0.05	8.86	-6.47	20.29	0.87
월지급식이머징마켓증권- 자C-w(채권-재간접형)	0.00	0.00	-5.23	21.28	
월지급식이머징마켓증권- 자 S (채권-재간접형)	0.70	0.31			
참조지수	2.29	7.39	-4.70	20.76	5.92



- 1) 참조지수=JP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Hedged to KRW
-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3)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대상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였음. 다만 각 투자신탁 및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환산한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음

※ 상기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과거(변경전) 참조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¹⁾	후취 판매 수수료 ^{2) 3) 4)}	환매 수수료 ⁵⁾	전환 수수료
종류 A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0.70%이하	-	-	-
종류 C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	-	-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	-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 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	-
종류 I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투자하는 법인	-	-	-	-
종류 F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특정금전신탁	-	-	-	-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하	-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됨. 다만,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주3)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상기 명시한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해당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주4)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음**

주5)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 이 투자신탁은 1940년 미투자자문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상 미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수익증권은 1933년 미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상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증권은 미국법, 적용법률, 규칙 또는 해석상 등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이상 미합중국 또는 그의 영토, 속령 혹은 관할지에서 또는 이러한 지역들의 국민이나 거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도되지 않습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자신이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015년 12월말 기준)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피투자펀드 보수포함)	증권 거래 비용
종류A	0.1000	0.6500	0.0400	0.0280	0.0000	0.8180	1.9014	0.0000
종류C	0.1000	1.0000	0.0400	0.0280	0.0000	1.1680	2.2514	0.0000
종류C-e	0.1000	0.8500	0.0400	0.0280	0.0000	1.0180	2.1014	0.0000
종류C-w	0.1000	0.0000	0.0400	0.0280	0.0000	0.1680	1.2380	0.0000
종류S	0.1000	0.2000	0.0400	0.0280	0.0000	0.3680	1.4514	0.0000
종류I	0.1000	0.1000	0.0400	0.0280	0.0000	0.2680	1.3380	0.0000
종류F	0.1000	0.0500	0.0400	0.0280	0.0000	0.2180	1.288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07%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2015년 12월말 기준, 단위: 원)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2,765	331,963	529,529	1,116,638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63,027	679,564	1,138,796	2,503,503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704	377,368	661,442	1,505,627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30,738	727,402	1,274,974	2,902,200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331	328,904	576,496	1,312,268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5,365	678,939	1,190,029	2,708,840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218	54,279	95,139	216,563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6,878	399,984	701,083	1,595,862
종류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7,715	118,897	208,399	474,376
종류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8,749	468,931	821,932	1,870,948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466	86,588	151,769	345,469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7,127	432,293	757,713	1,724,768
종류 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342	70,433	123,454	281,016
종류 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2,003	416,138	729,398	1,660,315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A 수익증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S는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월 분배에 관한 사항

(1) 월 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익배분과는 별도로 매1개월 단위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분배금"이라 합니다)으로 분배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익으로부터 우선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분배금은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월 분배금액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매 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과 함께 과표 기준가격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과세효과로 인하여 실제로 최종 투자자가 받는 월 분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분배금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채무증권들의 추정 이자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총 투자 이익 상당액을 분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분배금 지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원본에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원본에 대한 영향(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 모두 포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원본에서 분배합니다.

(나) 분배 기준일

매월 첫번째 영업일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1일인 경우 설정일 익월의 첫번째 영업일로,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설정일 익월의 첫번째 영업일로 합니다.

월 분배금지급 기준일에 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직후에 수익증권의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대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에 월 분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당일포함)부터 제7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2) 월 분배금의 지급연기

분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2.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채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채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평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의 100%까지 잠식된 경우에도 분배금의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분배금 지급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분배금 지급을 재개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배금 지급연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분배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과세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개인 15.4%, 일반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월 분배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분배금액에 대하여 매 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는 월 분배하는 상품이 아닌 상품에 투자하는 수익자들에 비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4.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2) 매입 및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9시~오후5시)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D D+1 D+2 자금납입 수익증권매입 (5시 이전) (D+2기준가격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D D+1 D+2 D+3 자금납입 수익증권매입 (5시 경과후) (D+3기준가격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 D D+2 D+7 환매청구 기준가 환매대금 (5시 이전) 적용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 D D+3 D+8 환매청구 기준가 환매대금 (5시 경과후) 적용 지급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 1)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오후 5시 이전에 수령한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까지,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한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제11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5.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전환	– 전환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8영업일(D+7)에 전환	– 전환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9영업일(D+8)에 전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환청구의 취소(정정)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 1)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오후 5시 이전에 수령한 전환청구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전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까지,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한 전환청구에 대하여는 제11영업일까지 환매하여 환매금이 지급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수합니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 현황

전환대상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전략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

(3) 전환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자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을 하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 간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나)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판매하지 않거나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이전에 전환을 원하는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해당 수익증권이 판매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시 “II. 1. 수수료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환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라) 수익자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이는 판매회사 정책이나 전산 시스템 등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판매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익자는 투자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하는 경우 환매의 경우에 준하여 당초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이익에서 관련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제4기 및 제3기 투자신탁 자산총액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계감사 적용이 면제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며 참조용으로 기재됩니다.

(단위: 일)

요약재무정보	제 5 기(반기)	제 4 기	제 3 기
	20151111	20150511	20140511
I. 운용자산	9,117,600,128	11,073,434,795	18,914,678,529
증권	9,024,796,216	11,019,705,586	18,727,368,545
현금 및 예치금	92,803,912	53,729,209	187,309,984
II. 기타자산	174,225,891	215,829,610	226,711,201
자산총계	9,291,826,019	11,289,264,405	19,141,389,730
II. 기타부채	176,011,341	96,007,415	233,033,634
부채총계	176,011,341	96,007,415	233,033,634
I. 원본	10,357,606,257	12,013,289,808	20,354,270,448
II. 수익조정금	155,823,215	593,101,609	2,249,292,302
III. 이익잉여금	-1,397,614,794	-1,413,134,427	-3,695,206,654
자본총계	9,115,814,678	11,193,256,990	18,908,356,096
I. 운용수익	-278,617,273	911,004,875	-1,888,879,600
이자수익	632,459	2,555,612	5,140,828
매매/평가차익(손)	-279,249,732	908,402,479	-1,894,045,187
기타이익		46,784	24,759
II. 운용비용	44,217,440	128,617,537	214,303,149
관련회사보수	44,081,080	128,236,417	213,639,299
기타비용	136,360	381,120	663,850
III. 당기 순이익	-322,834,713	782,387,338	-2,103,182,749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0	0	0

※ 매매수수료는 손익계정항목이 아니므로 난외계정으로 표시하였습니다.